

#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시·도회 순회 간담회 개최 결과

글 | 제도연구실

협회(회장 최광주)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21개 시·도회를 직접 방문하는 전국 시·도회 간담회를 가졌다.

본 간담회는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협회의 대응노력과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회원에게 알리고 협회에서 마련한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의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간담회 내용 중 정부정책에 대한 협회의 대응노력에 관해서는 회원들로부터 많은 격려가 있었으며, 업역별 협의회 논의 및 정책 연구결과를 토대로 협회가 마련한 법령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동향 설명과 회원과 관련이 있는 유사법령의 개정추진경과 및 향후 전기관련법령의 개정 계획을 내용으로 진행되어서인지 회원들의 반응이 좋았으며 간담회 내내 열띤 토론이 계속되었다.

또한, 현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e-사랑자원봉사단, 회원 상조서비스, 전기설계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BIM프로세스 개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협회 수임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는 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과 조언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협회가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의견을 잘 종합하여 회원이 원하는 협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많은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



◆ 경북동부회

- 일 자 : 2011. 5. 22(일)
- 장 소 : 식당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박우배 도회장 외 100여명



◆ 경북서부회

- 일 자 : 2011. 5. 25(수)
- 장 소 : 식당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박청환 도회장 외 30여명



◆ 광주전남도회

- 일 자 : 2011. 5. 26(목)
- 장 소 : 식당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이준성 도회장 외 30여명



◆ 전북도회

- 일 자 : 2011. 5. 27(금)
- 장 소 : 식당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채수진 도회장 외 30여명



◆ 충남도회

- 일 자 : 2011. 6. 1(수)
- 장 소 : 도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이종언 도회장 외 20여명



◆ 서울서부회

- 일 자 : 2011. 6. 1(수)
- 장 소 : 시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김선복 시회장 외 30여명



◆ 서울남부회

- 일 자 : 2011. 6. 2(목)
- 장 소 : 시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유상봉 시회장 외 30여명



◆ 대구시회

- 일 자 : 2011. 6. 7(화)
- 장 소 : 도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박재용 시회장 외 30여명



◆ 경기남도회

- 일 자 : 2011. 6. 8(수)
- 장 소 : 시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엄정일 도회장 외 20여명



◆ 경기도회  
• 일 자 : 2011. 6. 8(수)  
• 장 소 : 도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문옥현 도회장 외 30여명



◆ 경남도회  
• 일 자 : 2011. 6. 9(목)  
• 장 소 : 도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김은수 도회장 외 40여명



◆ 부산시회  
• 일 자 : 2011. 6. 9(목)  
• 장 소 : 호텔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김재곤 시회장 외 30여명



◆ 울산시회  
• 일 자 : 2011. 6. 14(화)  
• 장 소 : 시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황치안 도회장 외 30여명



◆ 대전시회  
• 일 자 : 2011. 6. 16(목)  
• 장 소 : 호텔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우종수 시회장 외 20여명



◆ 제주도회  
• 일 자 : 2011. 6. 22(수)  
• 장 소 : 도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양문길 도회장 외 30여명



◆ 경기북도회  
• 일 자 : 2011. 6. 23(목)  
• 장 소 : 도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김수풍 도회장 외 30여명



◆ 인천시회  
• 일 자 : 2011. 6. 23(목)  
• 장 소 : 식당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최재규 시회장 외 30여명



◆ 강원도회  
• 일 자 : 2011. 6. 28(화)  
• 장 소 : 도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김종철 도회장 외 20여명



◆ 충북도회  
• 일 자 : 2011. 6. 29(수)  
• 장 소 : 식당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김태봉 도회장 외 30여명



◆ 서울동부시회  
• 일 자 : 2011. 6. 30(목)  
• 장 소 : 시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김영규 시회장 외 20여명



◆ 서울북부시회  
• 일 자 : 2011. 6. 30(목)  
• 장 소 : 도회 회의실  
• 참석자 : 최광주 협회장, 한덕수 시회장 외 30여명

# 전국 시·도회 간담회 논의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 전기사업법령 개정관련 협회의 정부 건의(안)

- 전기안전관리자와 주택관리사의 겸직금지 규정 신설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의 법제화
- 대행사업자의 등록기준 강화(대행협의회 요청사항 반영)
  - 자본금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의무보유 기술인력 100% 상향 조정
  - 등록 기술인력의 실무경력 50% 상향조정
  - 보조원의 등록요건 폐지
- 한전 전기공급규정 개정(500kW 미만 저압공급 가능)관련 후속조치
  - 저압 200kW 이상 제조업 등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 저압 500kW 미만 수용가의 대행 가중치 조정(고압 수용가의 60% 수준 조정)
- 대행가중치 관리를 개인에서 회사단위 체제로 개선
- 200kW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신설
- 기타 회원 권익개선 및 전기안전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등

## ■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관련 협회의 정부 건의(안)

- “전력기술”의 범위 확대(약전설비 등이 포함되도록 개선)
-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 감리원 수첩 불법대여 등에 따른 감리원 수첩의 정지 취소규정 마련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전기감리업자 지정업무를 시·도에서 협회로 위탁
- 책임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에 대한 용어정의 개선
- 감리배치신고 및 완료보고의 주체를 감리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
- 감리배치신고 및 완료보고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완화
- 대용량 전기설비 수용가의 정밀안전진단제도의 도입
- 하도급 제한 규정 마련
-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설계·감리업자의 용역업무 계속수행제도 도입
- 설계감리업무 활성화를 위한 적용대상 설비기준 확대
- 기타 감리협의회의 요구관련 제도개선방안 등

## ■ 향후 추진일정

- '11. 7월 ~ : 전국 시·도회 간담회 의견 내부 검토·분석
- '11. 7월 ~ 8월 : 법제도위원회 및 업역별 협의회와 개정(안)에 대한 검토·조율
- '11. 8월 ~ 9월 : 개정 건의(안) 지식경제부 제출·협의
- '11. 9월 ~ : 관련법령 개정 추진

## ■ 시·도회 간담회 결과 요약

- 회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택법, 국가기술자격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수많은 유사법령의 개정 추진내용 및 대응 경과, 전문대·특성화고 졸업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을 부여하는 정부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대응책,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협회 수임 추진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은 회원과 협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입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상주, 대행, 설계, 감리 업역별 협의회의 의견과 연구용역결과(전기사업법 : 전기안전학회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력기술 관리법 :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협회가 수행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전기사업법령 및 전력기술관리법령의 협회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더욱 폭넓게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었었으며, 향후 간담회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 보완작업을 거쳐 정부에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임



## 전기공사업법 ECM제도 도입관련 협회의 대응안내

전력산업의 대형화, 복합화, 글로벌화 등으로 설계, 감리의 역할과 수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설계가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전기공사감리(supervision)가 올바로 업무 scope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관련법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 글 | 제도연구실

지난, '10. 6. 15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성동 의원은 전기 ECM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공사업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을 발주자가 직접 업을 등록한 용역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용역을 전기공사업자에게 일괄발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CM at Risk)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의한 “공사감리”를 전기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부실방지를 위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 공사의 계획 · 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문화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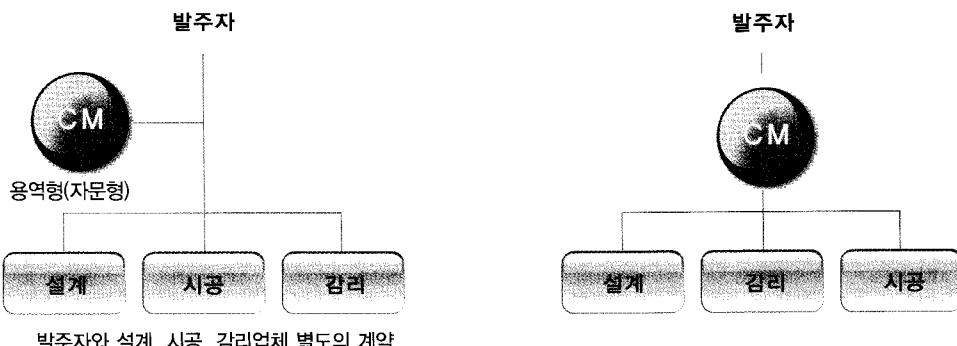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의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에서는 설계 · 시공 · 감리 등 여러 관련규정이 상충되게 규정되어 있어 업무중복에 따른 법령충돌과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다.

또한,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총체적인 권한과 규정을 담고 있는 전력기술관리법과 전기공사업법의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업무 “관리”에 관한 정확한 범위규정이 없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제도의 근거가 도입된 상태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용역형 CM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 용역형 CM(CM for fee)\*

####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이와 함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설계 및 감리의 용역업자 선정 시 또는 계약 시 전기공사관리자가 CONTRACTOR<sup>1)</sup>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설계, 감리 업체와 전기공사업체간 관련법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와 오해,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현재 전기공사업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공책임형 전기 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운영 중인 건설사업관리(cm for fee)와는 달리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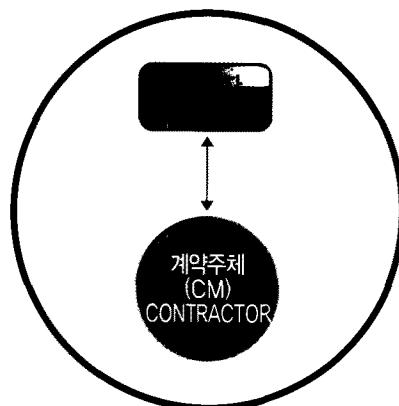
(조언)적 업무수행 이외에 정해진 공사금액내에서 종합적인 조정·관리업무를 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사관리 형태이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관리자가 전력시설물의 설계, 감리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할 경우 설계 및 감리 계약, 용역기간, 금액 등을 효율성에 입각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약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에 협회는 이러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등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할 수행 boundary와 전기공사업자의 무분별한 권한행사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대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기공사업법 개정추진에 적극대응하게 되었다.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 6. 15일 의안접수가 되었으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제도가 '11. 5. 24일 공포(시행 '11. 11. 25)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력산업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용역과 분리 발주되도록 하기 위한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ECM)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설계 및 감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 법령



[ 발주자와 계약관련 권한위임 ]

### 현 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 권성동 의원 개정(안)

제2조(정의) -----

1. ~ 9. (현행과 같음)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발주자와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 1) CM-CONTRACTOR : 공기·금액 등에 대한 계약과 감독을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범위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공사감리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러한 지식경제위원회 겸토보고서와 협회에서 마련한 대응 개정(안)을 바탕으로 설계 및 감리의 품질확보를 통한 전기공사의 부실방지라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전기업계가 상생 발전하고 건전한 환경속에서 지속성장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경부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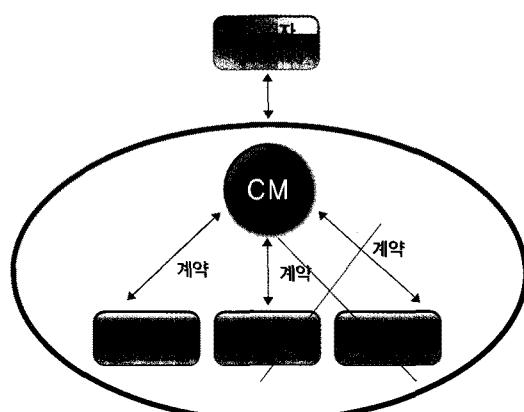
이와 함께 본 개정(안)을 발의한 권선동 의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원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설계 및 감리업체가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 결과 협회(안)에 대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었으며, 마침내 지경부와 국회의 협조 속에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현재 본 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1.6.21), 법사위원회('11.6.23)를 거쳐 본 회의('11.6.30)를 통과한 상태로 정부이송 및 공포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협회는 회원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 단서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향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공사관리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전기설계 및 감리업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감리의 독립적 업무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부실방지를 통한 품질확보라는 설계 및 감리용역업무의 기본취지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하며 변화해 나갈 것이며, 전기설계업계 및 감리업계의 육성·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용역형 CM제도를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국회 통과 전기공사업법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

#### 권성동 의원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발주자와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협회 수정(안) 및 국회 최종통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현행과 같음)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